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578
----------	------

2024년 2월 27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년 2월 5일, 김경훈 의원 외 50인
나. 회부일자: 2024년 2월 7일
다. 상정일자: 제32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4년 2월 27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김경훈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,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 법령과 맞지 않는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사항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- 나. 주요골자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사항을 삭제함 (안 제4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: 신·구조문대비표

4. 검토보고 요지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율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,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 법령과 맞지 않는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 사항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2023년 2월 개정된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의2¹⁾에서는 서울특별시 공기업과 출자·출연 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(전기차와 수소전기자동차) 구매 비율을 종전 80% 이상에서 100%로 상향한 바 있음.

다만, 차량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.

안 제4조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율을 상향하고,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가 어려운 경우 다른 환경친화적 자동차(하이브리드 등)를 구매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의견은 없음.

1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)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구입 또는 임차(이하 “구매”라 한다)하는 업무용 차량을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. 다만, 차량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.

또한, 단서 이행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협의에 있어서 시장의 경우는 협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 협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바, 이를 바로 잡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시장과”를 “시장,”으로, “공기업을의 장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”을 “공기업(이하 “공기업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(이하 “출자·출연기관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제1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구매비율을 따른다”를 “제18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차량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.

제4조제3항 본문 중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”를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”로 한다.

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경우 공기업 및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) ① <u>시장과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</u>가 설치한 <u>공기업의 장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장</u>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(이하 이 조에서 “구매”라 한다)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시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<u>제1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구매비율을 따른다.</u> <단서 신설>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</u>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</p>	<p>제4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) ① <u>시장, ----- 공기업(이하 “공기업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(이하 “출자·출연기관”이라 한다)</u>-----.</p> <p>② ----- <u>제18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. 다만, 차량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-----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-----.</p>

있다.

1. ~ 2. (생략)

<신설>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경우
공기업 및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산업
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